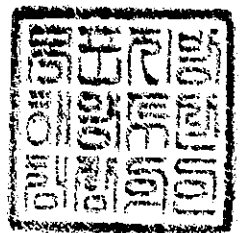


# 중선운항관리규정

다 물 도 호

(주)남해고속



## 중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     |                     |                     |                        |
|--------------|-----|---------------------|---------------------|------------------------|
| 제출자          | 업체명 | 주) 남해고속             | 사업자등록번호             | 411-81-02115           |
|              | 소재지 | 본사 : 목포시 해안로 182번지. |                     | 본사 전화번호 : 061-244-9915 |
|              |     | 지사 :                |                     | 지사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 성 기순 |     |                     | 생년월일 : 1941. 09. 25 |                        |

|           |          |       |      |          |                          |
|-----------|----------|-------|------|----------|--------------------------|
| 사업의<br>개요 | 선박<br>명세 | 선 명   | 다물도호 | 선박번호     | 어선번호 : 1303011 - 6469105 |
|           |          | 선 종   | 어선   | 총톤수      | 8.55 G/T                 |
|           |          | 여객정원  | 20 명 | 평균속력(노트) | 노트                       |
|           | 항로       | 기점항   | 다물도  | 종점항      | 다물도                      |
|           |          | 기항지 수 | 0 개소 | 항로거리     | 500 Mtr's                |
|           |          | 운항시간  | 5 분  |          |                          |
|           | 운항<br>계획 | 출항시간  |      |          |                          |
|           |          | 회항시간  |      |          |                          |
|           |          | 운항횟수  |      |          |                          |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 년 03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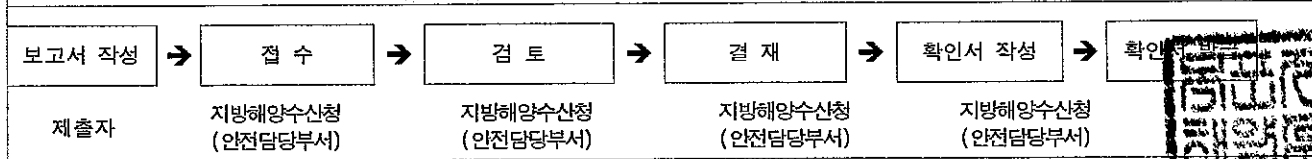
제출자 주) 남해고속 대표이사 성 기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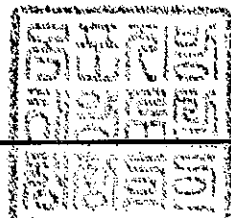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운항관리규정 | 수수료 :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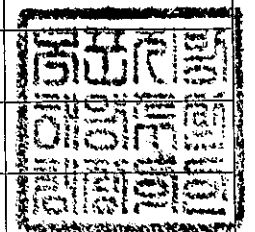


| <b>중 선 운 항 관 리 규 정</b>  |             |                           |       |              |                    |            |
|---|-------------|---------------------------|-------|--------------|--------------------|------------|
| 기항지명 : 흑산면 다물도 연안   |             |                           |       |              |                    |            |
| 사 업 자   | (주)남해고속     |                           | 대 표 자 | 성기순          | 생년월일               | 1941.09.25 |
| 여 객 선   | 선 명         | 남해퀵호                      | 321 톤 | 항 로          | 목포-홍도-가거도          |            |
|   |             | 남해엔젤호                     | 319 톤 |              |                    |            |
|   |             | 핑크돌핀호                     | 223 톤 |              |                    |            |
|   |             | 뉴엔젤                       | 320 톤 |              | 목포 - 홍도            |            |
|   |             | 뉴돌핀                       | 375 톤 |              |                    |            |
|   |             | 뉴퀵                        | 254 톤 |              |                    |            |
| 선 박 제 원   | 중선명         | 다물도호                      |       | 장×폭×심        | 12.35m×3.30m×0.96m |            |
|   | 총톤수         | 8.55                      |       | 기관종류<br>및 마력 | 디젤 264kw × 1기      |            |
|   | 선 질         | FRP                       |       | 통신장비         | VHF 1기             |            |
|   | 선 종         | 기선                        |       | 진수일자         | 2008.02.18         |            |
|   | 최대승선<br>인 원 | 총 20명 (여객 : 19명, 선원 : 1명) |       |              |                    |            |
| 운 항 계 획   | 운항거리        | 최소=200m / 최대=500m         |       | 선 장          | 김 광 업              |            |
|   | 운항회수        | 1일 편도 2회                  |       | 운 항<br>통제관   |                    |            |
|   | 운항시간        | 1편도=5분                    |       |              |                    |            |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선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br>2021년 03월 31 일<br>제출자 성 기 순<br>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            |
| 귀하가 제출한 중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합니다.<br>20    년    월    일<br>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                           |       |              |                    |            |
| 첨부서류 : 중선운항관리규정   |             |                           |       |              |                    |            |

## 개 정 이 력

### 다물도호 (다물도 종선)

| 개정일자        | 개정항목                            | 변경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2018.05.31. | 운항관리표지                          | 남해프린스호  | 삭제   | 항로변경                            |
| “           | 제3조 3항                          | 5분이내  | 5-10분 이내   | 실제시간적용                          |
| “           | 제8조 2항                          | 운항관리센터247-9466  | 247-9457/9458  | 수정                              |
| “           | “                               |   |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br>(122/119)  | 누락, 추가함                         |
| 2018.06.06. | 제2조 1항                          | 종선운항통제관   | 삭제   | 선임되어 있지않음                       |
| “           | 제6조 2항                          | “   | “  | “                               |
| “           | 제6조 3항                          | 목포해양경찰서장이--<br>- 종선운항통제관  | 삭제   | 선임되어 있지않음                       |
| “           | 제8조 2항                          | 종선통제관   | 삭제   | “                               |
| “           | “                               | 246-9457  | 246-9466   | 확인 유지                           |
| 2020.04.20  | [별지 제8호 서식]<br>운항관리표지           | 선명 : 남해스타, 남해퀸호<br>남해엔젤, 핑크돌핀   | 남해스타 삭제하고<br>뉴엔젤, 남해프린스,<br>뉴돌핀 추가   | 사업계획 변경에<br>따른 추가<br>(코로나19-한시) |
| 2020.07.03  | [별지 제8호 서식]<br>운항관리표지           | 선명 : 남해퀸호, 남해엔젤,<br>핑크돌핀, 뉴엔젤, 남해프린<br>스, 뉴돌핀틀                          | 선명 : 남해퀸, 남해엔젤<br>핑크돌핀, 뉴엔젤, 뉴돌핀,<br>뉴퀸, 남해프린스로 변경   | 사업계획 변경에<br>따른 추가<br>(코로나19-한시) |
| 2021.3.31   | 제 2 조 :<br>선박 운항기준<br>③ 신설      | -   | ③ 운항통제기준 :<br>초쾌속선과 동일   | 운항통제기준 :<br>본선과 동일<br>일치        |
|             | 제 5 조 : 선박운<br>항                | 3. 기상악화시 또는 태풍접근<br>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br>-----육상으로 올리는 등의<br>안전확보에 --- 한다. | 3.기상악화시 또는 태풍접근<br>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br>혹산도항으로 피항 또는<br>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br>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br>하여야 한다. | 피항지 혹산도항<br>추가                  |
|             | 제 8 조 :<br>유사시 긴급보고<br>체계에 관한사항 | 비상연락체제에 의한<br>연락(선조치 후 보고)<br>(종선) - - 삭제                               | 본선 (쾌속선)<br>[비상상황 연락기관]<br>으로 일치 되게 변경   | [비상상황 연락<br>기관]<br>: 본선과 일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선 운 향 관 리 규 정

##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객선 (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육지간 여객의 증계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종선“다물도호”의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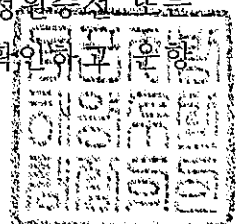
- ① 종선선장은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종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에 통보하고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선선장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종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와 협의하여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항통제기준 : 초쾌속선과 동일

## 제 3 조 : 운항항로(별첨)

- ① 운항구간 : 흑산면 다물도리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서 요청하는 지점에서 접안할 수 있다.
- ② 운항거리 : 500m 이내
- ③ 운항시간 : 5 - 10분 이내
- ④ 항로수심 : 3m~30m
- ⑤ 항해장애물 : 없음.

## 제 4 조 : 여객 승·하선 (본선과의 견현 높이차 30Cm이내)

- ① 여객의 승하선시는 종선선장 및 본선선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 선 하도록 한다.
- ② 여객은 정원 범위안에서 승선할 수 있으며 승선인원은 본선선장이 확인하고 통제한다.
- ③ 여객은 승선 즉시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도록 한다(여객배치도 별첨)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지정된 선착장을 이용한다.
- ⑤ 종선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보관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운항구간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 ⑥ 종선선장 및 본선선장은 종선의 안전성 및 복원성을 감안하여 정원승선 또는 적량화물을 적재토록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도록 한다.(위험물 적재금지)



## 제 5 조 : 선박운항

### ① 출항준비 사항

종선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

### ② 운항종료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

1. 운항종료 후 다물도리항 선착장(석축부두)에 계류.
2. 종선안전관리 책임은 선주(선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기상악화 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 흑산도항으로 또는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6 조 : 운항관리

### ①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1. 정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차례 증회 운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객정원만이 승선 했을지라도 여객 휴대화물의 적재에 따른 복원성을 감안하여 승선인원을 적절히 감원 승선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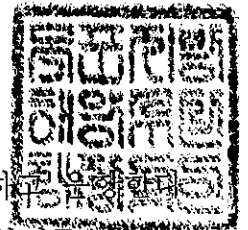
### ② 출항 전 점검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1항(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선장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선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정보완 조치 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 ③ 종선 운항 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1. 종선선장은 본선선장과의 상호안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종선선장은 종선에 특이사항 발생 시는 지체 없이 본선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종선선장은 여객의 승하선시 및 종선 운항 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 7 조 : 종선 정비 및 점검

- ① 종선선장은 법정검사 시 철저한 정비 후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필히 수행한다.
- ② 안전시설,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은 출항 전 점검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③ 사업자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2항(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월1회 이상 종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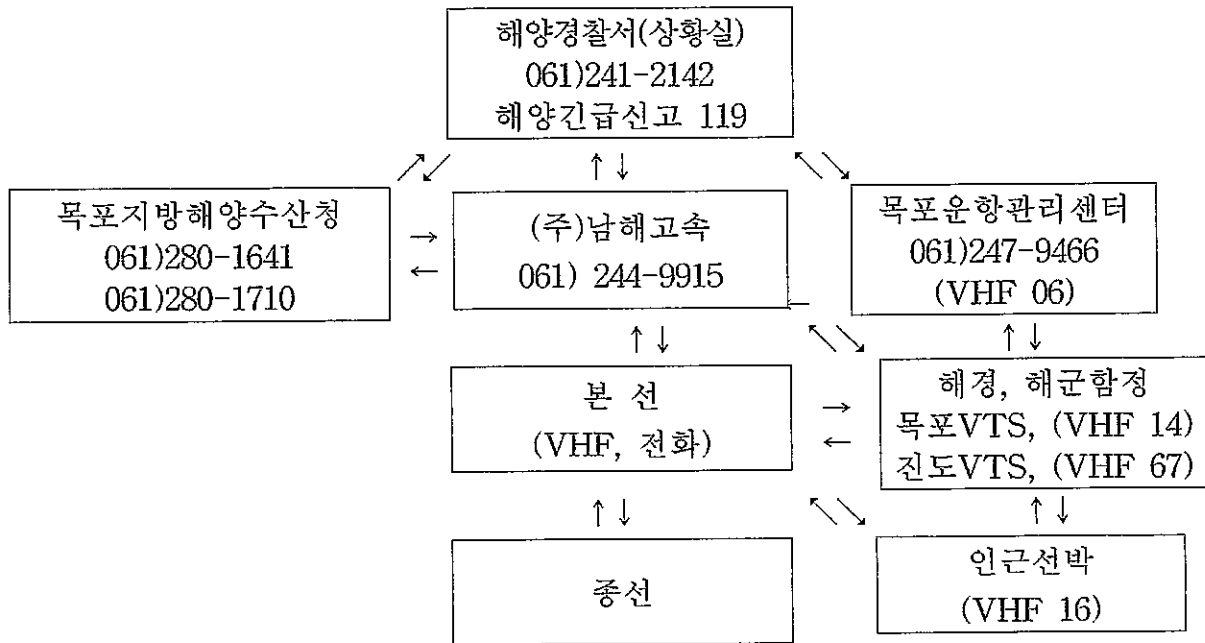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2.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비상상황 연락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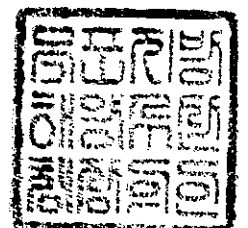
3. 비상시 중선과 본선과의 연락은 통신기(VHF)·휴대전화와 수기 등으로 한다.
4.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에 통보
5.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기록유지
6. 피해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 기타 사항**

- ① 중선운항관리규정을 중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등” 사본을 중선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한다.

**붙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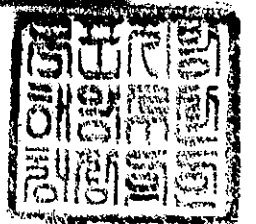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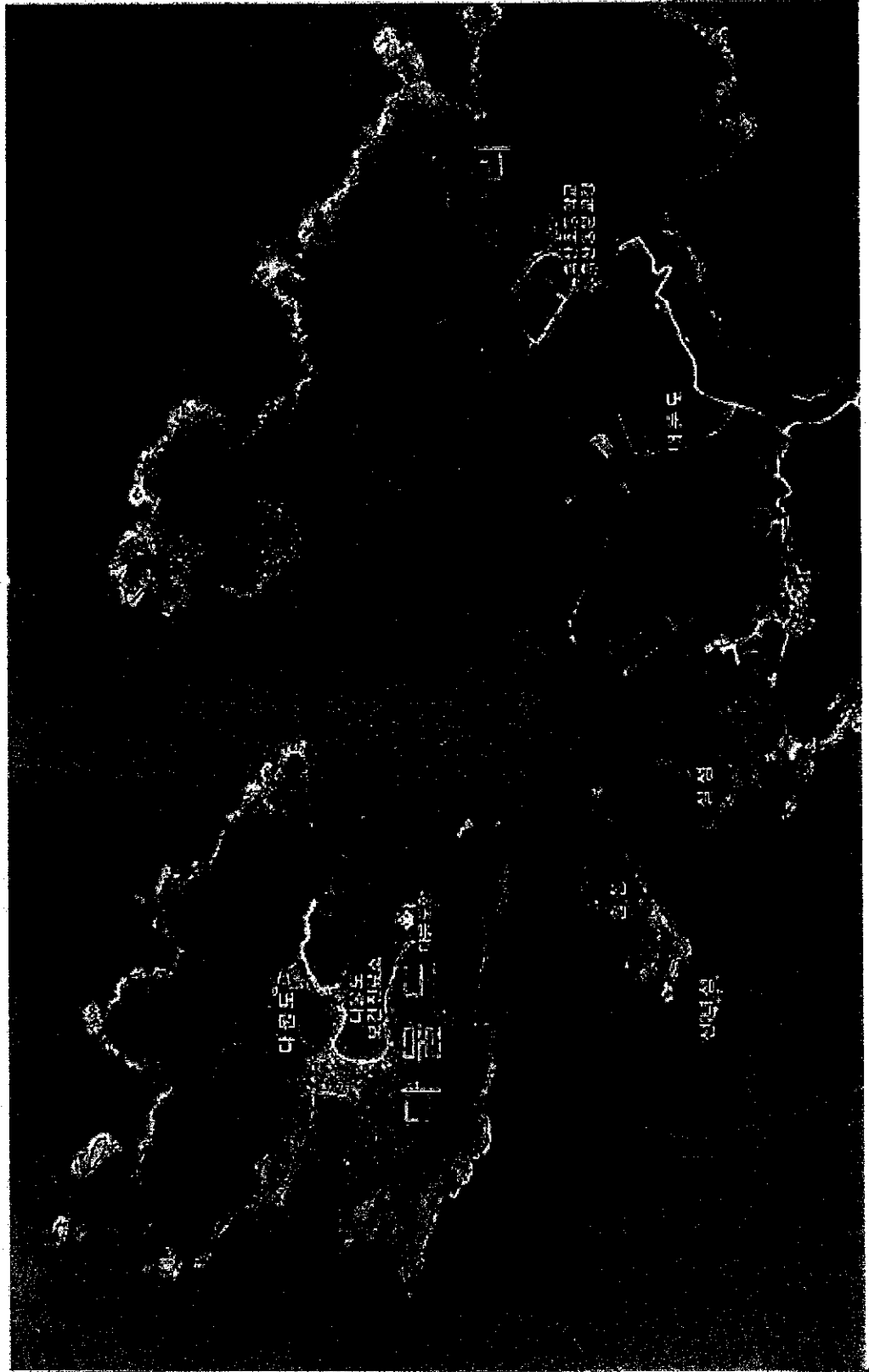
1. 운항항로
2. 여객배치도
3. 어선검사증서
4. 어선특별검사증서



# 1. 운항항로

[별첨 1] 운항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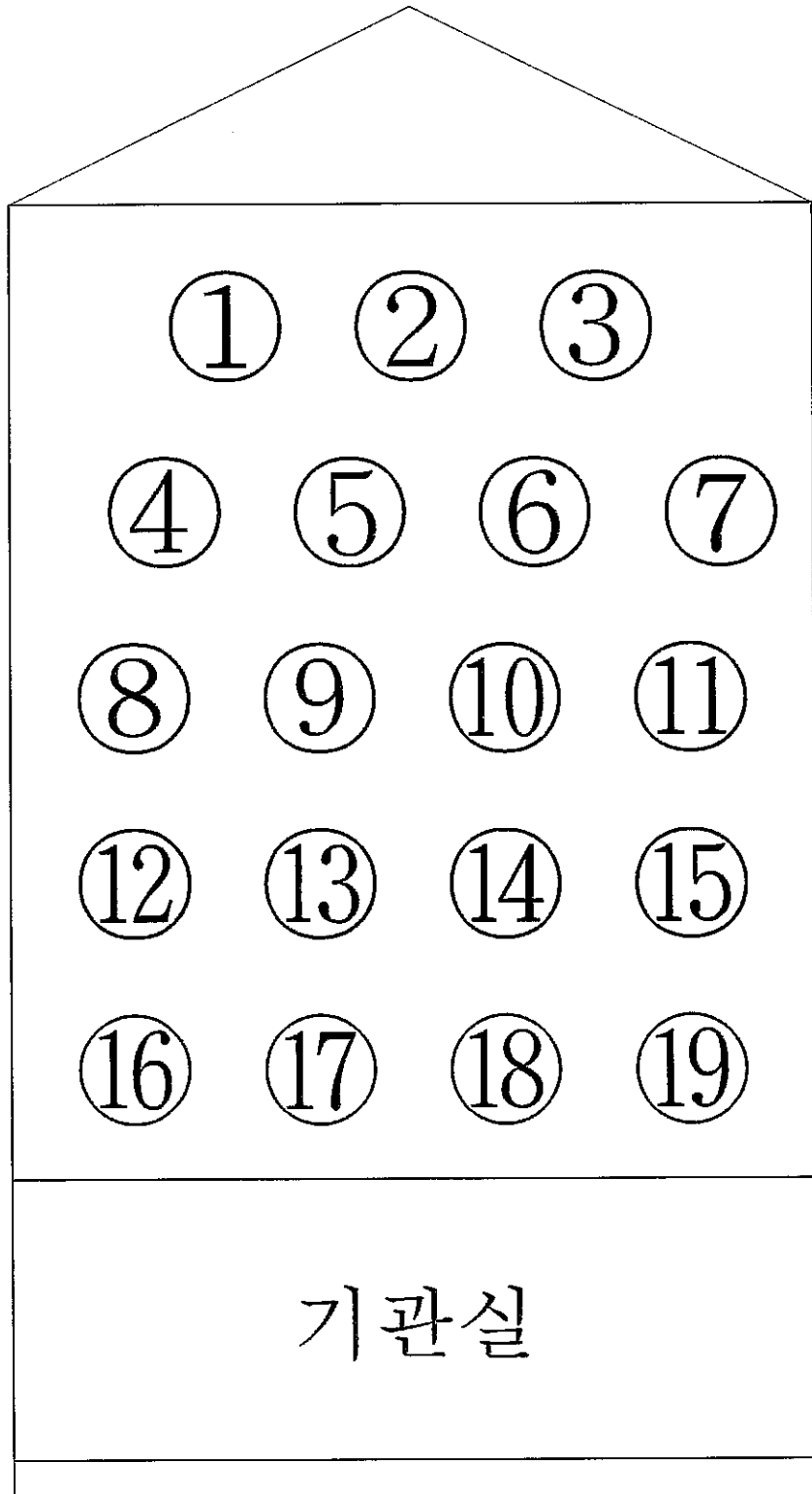
- 기항지명 : 흑산면 다물도
- 종선명 : 다물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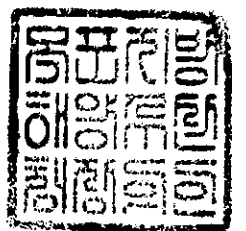


[별첨2]

여객배치도



종선명 : 다물도호



### 3. 어선검사증서

(양쪽)

##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MP-18-22881 호  
Certificate No.

|   |  |                         |                 |
|---|--|-------------------------|-----------------|
| 어선의 명칭<br>Name of Ship                              | 라왕도호   | 어선번호<br>Official Number | 1304011-6469105 |
| 선체<br>Ship's Material                               | FRP  | 총톤수<br>Gross Tonnage    | 8.85톤           |
| 어업의 종류<br>Type of Fishery                           | 어선(어선)   |                         |                 |
| 주기관<br>Main Engine                                  | 디젤기관   | 264 (KW)<br>360 (PS)    | 대<br>대          |
| 배의 길이<br>Ship's Length                              | 12.39 미터   | 출력<br>Output            | 대<br>대          |
| 최대승객인원<br>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20<br>Crew 1<br>Passenger 19   | 승객<br>Passenger         | 19명             |
| 항해와 관련된 조건<br>Conditions for Navig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인 경우 제55호(제64조)에 따른 특별검사를 받음</li> <li>* 어선번호와 일치하는 사람인 경우 제64조(제64조)에 따른 특별검사를 받음</li> </ul> |                         |                 |
| 유효기간<br>Validity                                    | 2018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17일 까지        |                 |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_\_\_\_\_ until \_\_\_\_\_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03월 1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10mm x 297mm (양쪽 등지) 2/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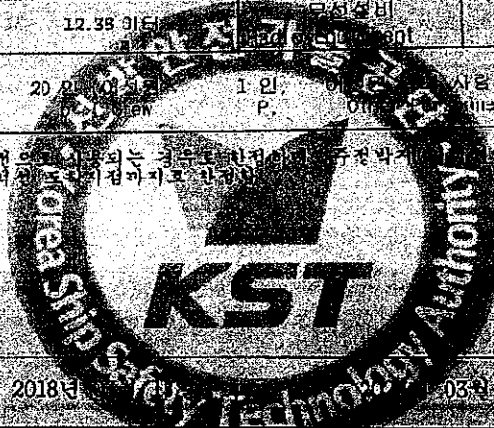


#### 4. 어선특별검사증서

■ 어선안전규칙 [별지 제63호시행]

###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   |  |                         |                     |
|---|--|-------------------------|---------------------|
| 제 MF-18-22884 호<br>Certificate No.                  |  |                         |                     |
| 어선의 명칭<br>Name of Ship                              | 다풍호  | 어선번호<br>Official Number | 1303011-6469108     |
| 선질<br>Ship's Material                               | FRP  | 총톤수<br>Gross Tonnage    | 0.55톤               |
| 어업의 종류<br>Type of Fishery                           | 어선   |                         |                     |
| 주기관<br>Main Engine                                  | 디젤기관   | 기관<br>Type              | 264 [kW] / 360 [PS] |
| 배의 길이<br>Ship's Length                              | 12.38 미터   | 무선장비<br>Radio Equipment | 무선 전화               |
| 최대승선인원<br>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 Total 20 명<br>(승선인원)   | 1 인<br>P.               | 사람<br>(19 인)<br>P)  |
| 항해의 관련된 조건<br>Conditions for Navigation             | - 풍속 20 노트 이상되는 경우 등 안개가 유선박에 10미터 이하의 하선하는 포구)로부터<br>역방향으로 접근하지도 안함 |                         |                     |
| 유효기간<br>Validity                                    | 2018년  | 03월 17일                 | 까지                  |




어선안전규칙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05월 14일

##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10mm x 297mm (보존용지)

